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순서

I. 국가채무관리계획 개요	1
II. 국가채무 현황	4
III. 국가채무 전망 및 관리방안	11
〈부록〉 지방정부 채무	18

I. 국가채무관리계획 개요

1. 수립목적 및 근거

- ☐ 중기적 시각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및 상환계획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
- ☐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 제91조 등에 따라 국회 제출

2. 작성주체

-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를 총괄·관리하며, 매년 각 부처 협조를 얻어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 국고채권(이하 '국고채'), 국민주택채권(이하 '국민주택채'),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등 세부사항은 소관 부처가 관리

3. 작성범위

◇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¹⁾이 발행한 채권,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회계 또는 기금 간 내부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차입금은 제외

① 국채

- 국고채, 국민주택채, 외평채 등*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 그 외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하기 위한 '출자 재정증권'이 있으나, '86년 이후 발행실적이 없고 잔액 규모가 작음(94억원)

1)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의미

< 국채 종류별 발행조건 및 발행 방법 >

종류	발행조건		발행방법	발행목적	소관 기금	근거법령
	금리	만기				
국고채	낙찰금리	2~50년	경쟁입찰	재정자금 조달	공공자금 관리기금 (기획재정부)	국채법,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제1종 ²⁾) 국민주택채	연1.3%	5년	첨가소화	주택건설 촉진 재원조달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외평채	낙찰금리	발행시 결정	경쟁입찰	외환시장 안정 등	외국환 평형기금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② 차입금

○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으로 부터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

- 차입대상에 따라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³⁾으로 구분

* 해외차입금은 '16년까지 전액 상환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없음

③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이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

- 국회의 사전의결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다음 연도 등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상환하는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함

2) 제2종 국민주택채는 '13년 5월 폐지

3) 해외차입금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차관 중 정부가 직접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재정차관을 의미(공공차관 중 보증차관은 보증채무로 분류)

〈 참고 〉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 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Ⅱ. 국가채무⁴⁾ 현황

1. 국가채무 차입 및 상환 실적

□ '22년 국가채무는 1,067.4조원(GDP대비 49.4%)으로 '21년(970.7조원, GDP대비 46.7%) 대비 96.7조원 증가(+2.7%p)

○ 중앙정부 채무는 1,033.4조원으로 184.5조원을 차입하고 90.2조원을 상환하여 전년 대비 94.3조원 증가

○ 지방정부 순채무는 33.9조원으로 전년 대비 2.4조원 증가

< 국가채무 차입 및 상환실적 >

(단위: 조원)

구 분	'20년 잔액	'21년			'22년		
		차입	상환 ¹⁾	잔액	차입	상환 ¹⁾	잔액
□ 국가채무	846.6	-	-	970.7	-	-	1,067.4
(GDP 대비, %)	(43.6)	-	-	(46.7)	-	-	(49.4)
○ 중앙정부 채무	819.2	201.6	81.6	939.1	184.5	90.2	1,033.4
■ 국채	815.2	200.9	79.0	937.0	183.1	88.6	1,031.5
- 국고채	726.8	180.5	63.6	843.7	168.6	74.8	937.5
- 국민주택채	78.9	18.8	15.5	82.2	14.4	14.4	82.2
- 외평채	9.5	1.6	△0.1	11.2	-	△0.6	11.8
- 출자재정증권	0.0	-	-	0.0	-	-	0.0
■ 차입금	3.3	0.7	1.9	2.0	0.8	0.9	1.9
- 국내차입금	3.3	0.7	1.9	2.0	0.8	0.9	1.9
- 해외차입금	-	-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0.7	0.0	0.7	0.1	0.7	0.7	0.1
- 일반회계	0.6	0.0	0.7	0.0	0.7	0.7	0.0
- 특별회계	0.1	-	0.0	0.1	-	-	0.1
○ 지방정부 ²⁾ 순채무	27.5	-	-	31.5	-	-	33.9

¹⁾ 외화표시 채무(외평채 등)의 환율 변동분 포함

²⁾ 지방정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4)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나, 정부 전체의 채무 규모 파악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순채무도 포함하여 분석

2. 국가채무 증감 추이

① 국가채무 증감 추이

- '22년 국가채무는 1,067.4조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
국가채무 증가율*은 전년(14.7%)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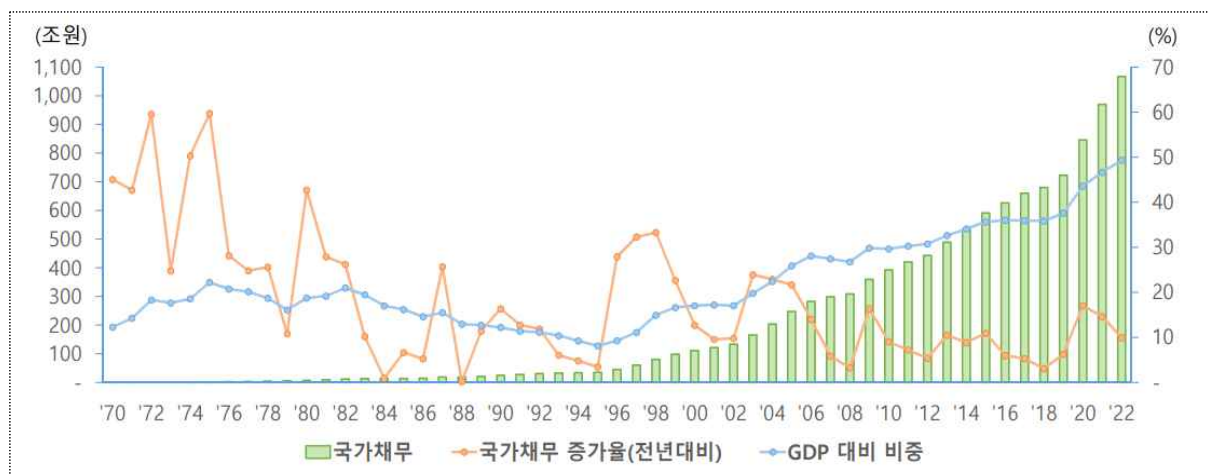
* 국가채무 증가율(전년대비, %) : ('18) 3.1 → ('19) 6.3 → ('20) 17.1 → ('21) 14.7 → ('22) 10.0

- 국가채무 총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 필요

* 국가채무(조원) : ('18) 680.5 → ('19) 723.2 → ('20) 846.6 → ('21) 970.7 → ('22) 1,067.4

** GDP 대비 비중(%) : ('18) 35.9 → ('19) 37.6 → ('20) 43.6 → ('21) 46.7 → ('22) 49.4

< 국가채무 추이 >



② 국제비교

-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한 '21년 결산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51.3%

< 주요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

(단위 : %)

우리나라	일본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독일	스웨덴
51.3	255.4	126.4	112.6	115.1	108.1	68.6	36.3

* 출처 : IMF Fiscal Monitor('23.4월)

<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단위: 조원, %)

연도	국가 채무 (A)	국내 총생산 (GDP) (B)	국가 채무 비율 (A/B, %)	연도	국가 채무 (A)	국내 총생산 (GDP) (B)	국가 채무 비율 (A/B, %)
'76년	3.0	14.5	20.8	'00년	111.2	651.6	17.1
'77년	3.8	18.6	20.2	'01년	121.8	707.0	17.2
'78년	4.7	25.2	18.7	'02년	133.8	784.7	17.0
'79년	5.2	32.4	16.1	'03년	165.8	837.4	19.8
'80년	7.5	39.7	18.8	'04년	203.7	908.4	22.4
'81년	9.5	49.7	19.2	'05년	247.9	957.4	25.9
'82년	12.0	57.3	21.0	'06년	282.7	1,005.6	28.1
'83년	13.3	68.1	19.5	'07년	299.2	1,089.7	27.5
'84년	13.4	78.6	17.0	'08년	309.0	1,154.2	26.8
'85년	14.3	88.1	16.2	'09년	359.6	1,205.3	29.8
'86년	15.0	103.0	14.6	'10년	392.2	1,322.6	29.7
'87년	18.9	121.7	15.5	'11년	420.5	1,388.9	30.3
'88년	18.9	146.0	13.0	'12년	443.1	1,440.1	30.8
'89년	21.1	165.8	12.7	'13년	489.8	1,500.8	32.6
'90년	24.5	200.6	12.2	'14년	533.2	1,562.9	34.1
'91년	27.7	242.5	11.4	'15년	591.5	1,658.0	35.7
'92년	31.0	277.5	11.2	'16년	626.9	1,740.8	36.0
'93년	32.8	315.2	10.4	'17년	660.2	1,835.7	36.0
'94년	34.4	372.5	9.2	'18년	680.5	1,898.2	35.9
'95년	35.6	437.0	8.2	'19년	723.2	1,924.5	37.6
'96년	45.6	490.9	9.3	'20년	846.6	1,940.7	43.6
'97년	60.3	542.0	11.1	'21년	970.7	2,080.2	46.7
'98년	80.4	537.2	15.0	'22년	1,067.4	2,161.8	49.4
'99년	98.6	591.5	16.7				

주 1) 경상가격 기준

2) '96년부터 지방정부 순채무 포함

3.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포트폴리오 분석

① 국가채무 구성 현황

- '22년 국가채무(1,033.4조원)는 국채 99.8%(1,031.5조원), 차입금 0.2%(1.9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01%(0.05조원)로 구성
- 국채 중 국고채는 937.5조원(국가채무 중 90.7%), 국민주택채는 82.2조원(7.9%), 외평채는 11.8조원(1.1%)
- 외화표시 외평채 11.8조원은 달러화 75.4%(70.25억 달러), 유로화 24.6%(21.5억 유로)로 구성

< 연도별 국가채무 구성 현황 >

(단위: 조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 국가채무	651.8 (100.0)	699.0 (100.0)	819.2 (100.0)	939.1 (100.0)	1,033.4 (100.0)
○ 국채	648.4 (99.5)	696.3 (99.6)	815.2 (99.5)	937.0 (99.8)	1,031.5 (99.8)
- 국고채	567.0 (87.0)	611.5 (87.5)	726.8 (88.7)	843.7 (89.8)	937.5 (90.7)
- 국민주택채	73.3 (11.2)	76.4 (10.9)	78.9 (9.6)	82.2 (8.7)	82.2 (7.9)
- 외평채	8.0 (1.2)	8.3 (1.2)	9.5 (1.2)	11.2 (1.2)	11.8 (1.1)
○ 차입금	3.2 (0.5)	2.6 (0.4)	3.3 (0.4)	2.0 (0.2)	1.9 (0.2)
- 국내차입금	3.2 (0.5)	2.6 (0.4)	3.3 (0.4)	2.0 (0.2)	1.9 (0.2)
○ 국고채무부담행위	0.20 (0.03)	0.14 (0.02)	0.70 (0.09)	0.06 (0.01)	0.05 (0.01)
- 일반회계	0.06 (0.01)	0.06 (0.01)	0.65 (0.08)	0.01 (0.00)	0.00 (0.00)
- 특별회계	0.13 (0.02)	0.08 (0.01)	0.05 (0.01)	0.05 (0.01)	0.05 (0.01)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② 국가채무 만기 및 만기도래 현황

- 잔존만기별 국가채무 비중은 1년 미만 8.6%, 1~3년 19.7%, 3~5년 16.5%, 5~10년 19.9%, 10년 이상은 35.3%로 구성

- 잔존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물 비중 지속 상승

< '22년 국가채무 만기도래 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 국가채무	88.7 (8.6)	204.0 (19.7)	170.4 (16.5)	205.5 (19.9)	364.9 (35.3)	1,033.4 (100.0)
○ 국채	87.2 (8.5)	203.6 (19.7)	170.4 (16.5)	205.5 (19.9)	364.9 (35.4)	1,031.5 (100.0)
○ 차입금	1.5 (76.1)	0.5 (23.9)	- -	- -	- -	1.9 (100.0)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100.0)	- -	- -	- -	- -	0.1 (100.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2년 국가채무 평균만기는 11.2년으로 10년 이상 장기물 비중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말 대비 0.4년 증가

- 국가채무 듀레이션⁵⁾은 '20년까지 지속 상승해왔으나, '22년 7.8년으로 '2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 연도별 국가채무 평균만기 및 듀레이션 >

(단위 : 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평균만기	5.6	6.1	6.7	7.2	7.7	8.4	9.2	9.7	10.4	10.8	11.2
듀레이션	4.8	5.0	5.6	6.2	6.5	6.9	7.7	8.3	8.7	8.6	7.8

5) 듀레이션(duration) :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평균만기 개념으로 채권투자시 현재가치 1원이 회수되는데 걸리는 평균기간을 의미함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채권의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낮을수록 듀레이션은 길어짐)

< 국가채무 만기도래 연도별 비중 비교 >

(단위 : %, %p)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18년	7.3	22.0	15.9	25.5	29.2	100.0
'19년	7.3	19.4	18.9	23.5	30.8	100.0
'20년	7.0	18.6	17.3	24.9	32.0	100.0
'21년(A)	6.1	21.4	16.2	24.0	32.4	100.0
'22년(B)	8.6	19.7	16.5	19.9	35.3	100.0
차이(B-A)	2.5	△1.7	0.3	△4.1	2.9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③ 국가채무 이자 현황

○ '22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9조원 증가

* 국고채 이자비용이 19.4조원으로 국가채무 이자비용의 약 92.2% 차지

- 최근 국내외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긴축에 따라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등 국가채무 이자비용 확대

*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18) 2.43 → ('19) 1.68 → ('20) 1.38 → ('21) 1.79 → ('22) 3.17

<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비용 >

(단위: 조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 국가채무 이자 ¹⁾	18.7	18.0	18.7	19.2	21.1
○ 국채 이자 (국채 잔액 대비, %)	18.6 (2.9)	18.0 (2.6)	18.6 (2.3)	19.2 (2.0)	21.0 (2.0)
■ 국고채	16.9	16.3	16.8	17.7	19.4
■ 국민주택채	1.4	1.3	1.5	1.2	1.3
■ 외평채(외화표시)	0.3	0.3	0.3	0.3	0.3
○ 차입금 이자 (차입금 잔액 대비, %)	0.06 (2.0)	0.05 (1.9)	0.04 (1.2)	0.03 (1.7)	0.03 (1.5)
■ 국내차입금	0.06	0.05	0.04	0.03	0.03

¹⁾ 국가채무 이자 :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 채무 이자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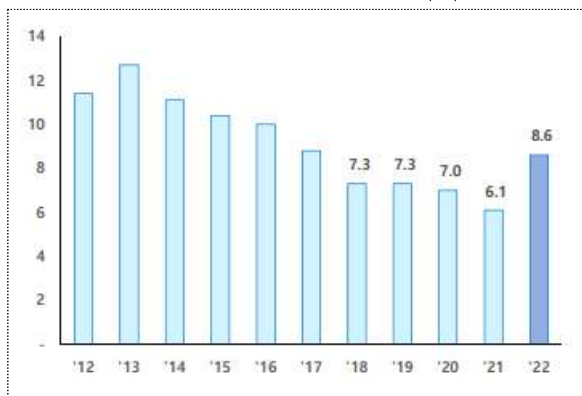
4 국제비교

○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채무 비중은 8.6%로 주요 선진국 평균(20.3%)보다 낮은 수준

- 장기물 발행 확대 등으로 단기채무 비중이 지속 감소하다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단기채* 비중 증가

* 추경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시 단기채(3년·5년물) 집중 발행

< 단기채무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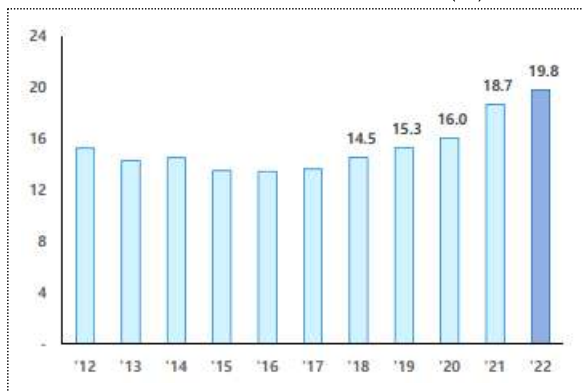
< 주요국 단기채무 비중(%) >



○ 외국인 보유한 국가채무 비중은 19.8%로 주요 선진국 평균 (21.0%)보다 낮은 수준이나, '16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 외국인 보유 비중 증가는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는 반면, 급격한 자본 유·출입 등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 외국인 보유 비중 추이(%) >



< 주요국 외국인 보유 비중(%) >



Ⅲ. 국가채무 전망 및 관리방안

1. 2023년 국가채무 전망

□ '23년말 국가채무는 1,128.8조원(GDP 대비 50.5%)으로 '22년 결산(1,067.4조원) 대비 61.4조원 증가할 전망

○ 일반회계 적자보전(45.8조원) 및 외환시장 안정(5.5조원) 등을 위한 국고채(58.6조원) 잔액 증가 등에 기인

○ 지방정부 순채무는 전년 대비 0.3조원 증가할 전망

< '23년 차입 및 상환 추정액 >

(단위: 조원)

구 분	'22년 결산(A)	'23년 예산(B)	'23년말 전망			전년 대비 (C-A)	예산 대비 (C-B)
			차입	상환 ¹⁾	잔액(C)		
□ 국가채무	1,067.4	1,134.4	-	-	1,128.8	61.4	△5.6
(GDP 대비, %)	(49.4)	(50.4)	-	-	(50.5)	(1.1)	(0.1)
○ 중앙정부채무	1,033.4	1,101.7	188.1	127.0	1,094.5	61.1	△7.2
■ 국채	1,031.5	1,100.3	187.3	125.6	1,093.2	61.7	△7.1
- 국고채	937.5	999.0	167.8	109.2	996.1	58.6	△2.9
- 국민주택채	82.2	86.8	16.0	15.1	83.1	0.9	△3.7
- 외평채	11.8	14.5	3.5	1.3	14.0	2.2	△0.5
■ 차입금	1.9	1.2	0.7	1.5	1.1	△0.8	△0.1
- 국내차입금	1.9	1.2	0.7	1.5	1.1	△0.8	△0.1
- 해외차입금	-	-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2	0.1	-	0.2	0.1	-
- 일반회계	0.0	0.1	0.1	-	0.1	0.1	-
- 특별회계	0.1	0.1	-	-	0.1	-	-
○ 지방정부 순채무	33.9	32.6	-	-	34.2	0.3	1.6

¹⁾ 외화표시 채무(외평채, 해외차입금 등)의 환율 변동분 포함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2024~2027년 국가채무 전망

□ '27년 국가채무는 1,417.6조원(GDP 대비 53.0%) 수준으로 전망

○ 중앙정부 채무는 1,387.5조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30.2조원 수준

* 국가채무(조원) : ('24) 1,196.2 → ('25) 1,273.3 → ('26) 1,346.7 → ('27) 1,417.6

□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비율 '27년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

*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 ('24) 51.0 → ('25) 51.9 → ('26) 52.5 → ('27) 53.0

< '24~'27년 국가채무 증감 전망액 >

(단위: 조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차입	상환	잔액	차입	상환	잔액	차입	상환	잔액	차입	상환	잔액
□ 국가채무 총계	-	-	1,196.2	-	-	1,273.3	-	-	1,346.7	-	-	1,417.6
(GDP 대비, %)	-	-	(51.0)	-	-	(51.9)	-	-	(52.5)	-	-	(53.0)
○ 중앙정부 채무	195.4	126.6	1,163.4	233.5	154.8	1,242.0	198.2	123.6	1,316.6	182.9	112.0	1,387.5
■ 국채	194.5	125.6	1,162.1	232.8	154.1	1,240.8	197.5	122.9	1,315.3	182.2	111.3	1,386.2
- 국고채	158.8	108.5	1,046.4	195.5	115.8	1,126.1	160.2	85.2	1,201.1	144.9	72.8	1,273.2
- 국민주택채	16.0	15.4	83.7	18.0	18.6	83.1	18.0	18.8	82.3	18.0	18.8	81.5
- 외평채	19.7	1.7	32.0	19.3	19.7	31.6	19.3	18.9	31.9	19.3	19.7	31.5
■ 차입금	0.9	0.9	1.2	0.7	0.7	1.2	0.7	0.7	1.2	0.7	0.7	1.2
- 국내차입금	0.9	0.9	1.2	0.7	0.7	1.2	0.7	0.7	1.2	0.7	0.7	1.2
- 해외차입금	-	-	-	-	-	-	-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0.04	0.2	-	0.04	0.1	-	0.04	0.1	-	0.04	0.1
○ 지방정부 순채무	-	-	32.8	-	-	31.3	-	-	30.1	-	-	30.2

* 지방정부 순채무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전망자료 활용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국가채무 내역별 전망 및 관리방안

(1) 내역별 전망 및 관리방안

① 일반회계 적자보전

- '24년 국세수입 규모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이 증가하나, '25년 이후 '24년 대비 발행 규모 축소 전망
-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며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혁신 지속 추진

< 일반회계 적자보전 잔액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발 행	45.8	81.8	64.6	67.6	64.6
상 환	-	-	-	-	-
잔 액	651.6	733.5	798.1	865.7	930.3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② 공적자금 국채전환

- '02년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27년까지 지속 상환으로 잔액 감소 전망

< 공적자금 국채전환 잔액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발 행	6.1	4.0	4.8	4.8	4.1
상 환	10.3	9.8	10.5	10.5	10.5
잔 액	28.0	22.2	16.5	10.7	4.3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은 외환시장 안정, 외환보유액 안정적 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27년 269.4조원 수준으로 전망

* 전년대비 국채 잔액 증가액(조원): ('23)7.7 → ('24)△20.0 → ('25)5.1 → ('26)5.9 → ('27)5.1

-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응자산⁶⁾ 관리를 강화하여 이자 등 발행비용 자체상황이 가능하도록 관리
 - '24년 중 고금리 채무를 중심으로 국고채를 조기상환하고, 짧은 만기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여 이자비용 감축 병행
 - 외화자산은 안전성·유동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 예치, 한국투자공사 위탁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

<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합 계		273.4	253.4	258.5	264.3	269.4
외평채	발행	3.5	19.7	19.3	19.3	19.3
	상환	1.3	1.7	19.7	18.9	19.7
	잔액	14.0	32.0	31.6	31.9	31.5
국고채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발행	55.3	56.6	41.4	45.6	15.5
	상환	49.8	94.6	35.9	40.1	10.0
	잔액	259.4	221.4	226.9	232.4	237.9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6) 한국은행 예치금, 한국투자공사(KIC) 위탁자산 등의 형태로 외화 대응자산 보유

④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른 거래량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실제 발행 규모는 가변적이나, 향후 상환규모 증감에 따라 '27년에 81.5조원 수준으로 전망

* 주택도시기금법상⁷⁾ 부동산등기 등을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화

- 용자금의 금리 관리 및 여유자금의 만기구조 합리화를 통해 채권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 국민주택채권 만기도래 시점과 여유자금 운용상품의 만기를 효율적으로 매칭하여 매월 주기적인 상환에 안정적으로 대응

<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잔액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발 행	16.0	16.0	18.0	18.0	18.0
상 환	15.1	15.4	18.6	18.8	18.8
잔 액	83.1	83.7	83.1	82.3	81.5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7)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르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③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국민주택채의 매입이 의무화

〈 참고 〉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대표적
-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 강화

□ (금융성 채무)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이 해당
-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며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 자산 관리 노력 강화

〈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현황 및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예산	전망				
□ 국가채무	1,067.4	1,134.4	1,128.8	1,196.2	1,273.3	1,346.7	1,417.6
○ 적자성 채무	676.0	721.3	718.0	792.4	849.8	910.4	968.6
(비중, %)	(63.3)	(63.6)	(63.6)	(66.2)	(66.7)	(67.6)	(68.3)
○ 금융성 채무 ¹⁾	391.3	413.0	410.8	403.7	423.5	436.3	449.0
(비중, %)	(36.7)	(36.4)	(36.4)	(33.8)	(33.3)	(32.4)	(31.7)

¹⁾ '22년 금융성 채무에 해당하는 회계·기금별 채무 대비 대응자산(금융자산) 부족분은 95.5조원, 채무 대비 대응자산 초과 보유분은 100.5조원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국고채 관리방안

□ 국고채 발행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대

- 경제복합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 성장기반 확충 위한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높은 국고채 발행량 유지

* 연간 국고채 발행량(조원) : ('20)174.5 → ('21)180.5 → ('22)168.6 → ('23e)167.8

- 국채금리는 가계·기업대출의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등 금융 시장 내 영향력도 확대 →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필요

* 국고채 발행잔액 / 전체 채권잔액(%) : ('21말)37.8 → ('22말)39.9 → ('23.7)40.6

□ 국고채 발행·유통시장 안정적 관리 추진

- 체계적·효율적인 국고채 발행·상환 관리

- 재정상황 및 대내외 경제여건, 시장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기별·연물별 발행량 탄력 배분
- 원활한 발행을 위한 국고채전문딜러(PD) 인수역량 강화
- 적정 수준의 조기상환을 통해 국고채 만기구조를 분산하여 미래 차환리스크 축소

- 국고채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 및 수요기반 확대

- 외국인의 국채 투자수요 확대를 위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노력 지속
- 개인의 국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국고채와 차별화된 판매 구조와 인센티브를 부여한 '개인투자용 국채' 신규 도입

-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토대로 필요시 적기에 시장안정조치 실시

〈부록〉 지방정부 채무⁸⁾

1. 작성 배경

- 국가재정법(제91조)상 국가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는 포함되지 않아 국가채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 지방정부 채무도 포함되지 않으나,
 - 국가채무의 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성 및 국제비교 등을 위해 '05년부터('96년도까지 소급) 지방정부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
- '08회계연도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를 모두 포함한 국가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작성
 -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방정부 채무현황, 향후 전망과 함께 주무부처 관리방안을 수록

2. 지방자치단체 채무 개요 및 제도

- (종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 보증채무부담행위 확정액으로 구분
 -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제44조(채무부담행위) 등
- (지방채) 대규모 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해 외부로부터 증권, 차입금 형식으로 차입하는 금액
- (채무부담행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보증채무부담 확정채무) 보증채무 부담행위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 책임이 확정된 금액

8) 지방정부 채무는 지방자치단체 채무와 지방교육자치단체 채무가 있으며, 전자는 행정안전부, 후자는 교육부에서 관리

□ (발행)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 의결로, 한도액 초과시에는 행안부 협의 또는 승인 후 지방의회 의결로 발행

- 한도액은 자치단체별 채무액, 경상일반재원 등을 기초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

< 한도액 산정 기준 >

구 분		시·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구
총 한 도 액 (A + B)	기본 한도액(A)	【경상일반재원 - (일반채무 + BTL 임차료 + 우발채무 50%)】× 10%	
	대도시 특례	기본한도액의 10% 추가	
	별도한도액 (B)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24년 차환채 발행액 + 지역일자리사업(투자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채무관리) 지방채 잔액 및 향후 5년간 지방채 발행·상환계획 등을 매년 수립,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관리채무부담도가 35% 이상인 자치단체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보고 및 행안부 제출
- 관리채무부담도 60% 이상인 자치단체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상환에 의무 사용

$$* \text{관리채무부담도} = \frac{\text{관리채무(일반채무+BTL임대료)}}{\text{경상일반재원(결산)}} \times 100$$

3.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및 관리방안

[1] 현황

□ '22년 지방자치단체 총채무⁹⁾는 38.3조원으로 전년대비 2.2조원 증가

○ 이 중 對중앙정부 채무는 4.4조원으로 전년대비 0.1조원 감소

□ '22년 지방자치단체 순채무는 33.9조원으로 전년대비 2.4조원 증가

* 지방자치단체 순채무는 지방자치단체 총채무(38.3조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채무(對중앙정부채무 4.4조원)를 차감하여 산출

< 지방자치단체 순채무 현황 >

(단위: 조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지방자치단체 총채무(A)	30.0	36.1	38.3
對중앙정부 채무(B)	2.6	4.5	4.4
지방자치단체 순채무(A-B)	27.4	31.5	33.9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전망

○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세입감소 및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지출 확대 등으로 '24년까지는 지방채 발행액이 다소 증가하나,

-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 지방채상환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25년 이후 채무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저리인 정부자금 차입수요 증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으로 對중앙정부 채무는 증가 전망

* 공모신청 시 국비 지원금의 10% 이상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의무 차입

9) 증서차입(11조원), 증권발행(27.2조원), 채무부담행위(19억원), 보증채무이행책임액(0.1조원)으로 구성

- 증서차입 : 중앙정부(4.4조원), 지방재정공제회 자금(0.6조원), 지역상생발전기금(1.5조원), 지역개발기금(1.6조원), 민간금융기관(2.9조원)
- 증권발행 : 도시철도채권(6.3조원), 지역개발채권(12.2조원), 모집채권(8.6조원)

< 지방자치단체 순채무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지방자치단체 총채무(A)	38.4	39.5	39.5	38.2	37.8
對중앙정부 채무(B)	4.2	6.8	8.2	8.0	7.7
지방자치단체 순채무(A-B)	34.2	32.8	31.3	30.1	30.2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관리방안

- ☐ 불필요한 재정지출 감소 및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 자치단체 우발채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협약체결(전) 컨설팅 지원 등 확정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
- ☐ 채무과다 자치단체(관리채무부담도 35% 이상) 관리와 예산대비 채무 비율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방재정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4. 지방교육자치단체 채무 현황 및 관리방안

[1] 현황

- ☐ '22년 지방교육자치단체 총채무는 對중앙정부 채무를 포함하여 전액 상환되어 잔액이 없는 상황

< 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 현황 >

(단위: 조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지방교육자치단체 채무(A)	1.6	0.4	-
對중앙정부 채무(B)	1.5	0.4	-
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A-B)	0.1	-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전망

- ☐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정안정화기금 잔액* 및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년(2023~2027년)간 지방교육자치 단체는 지방채 미발행 전망

* '22년말 기준 전국 17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기금 보유액 약 11.6조원

< 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지방교육자치단체 채무(A)	-	-	-	-	-
對중앙정부 채무(B)	-	-	-	-	-
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A-B)	-	-	-	-	-

[3] 관리방안

- ☐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보유한 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금 소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도의 지방채 발행·운용
- 지방교육자치단체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 편성을 대원칙으로 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우선 활용 및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채 발행 최소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순 서

I.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의의	185
II.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187
1. 대내외 경제 여건	187
2. 재정 여건	188
[참고] 중장기 세입 전망	189
III.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190
1. 소득·금융과세	191
2. 법인과세	193
3. 재산과세	195
4. 소비과세	197
5. 국제조세	199
6. 관세·FTA	201
7. 납세협력 등 기타	203
IV. 비과세 · 감면제도 운용방향	205

I.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의의

1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개요

-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작성하는 향후 5개 연도에 대한 조세정책 운용계획(국세기본법 §20의2)
 -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조세부담 수준 등을 포함
- 매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국가재정법 §7)
 - *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심의 기능 수행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2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의의

- 향후 5개 연도에 대한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시계에서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추진 가능
 -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제시
- 향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민간의 예측가능성 제고
 -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조세정책은 중장기 운용계획을 통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운용할 필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제출 절차

① 전문가 작업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부안 작성

* 조세정책 여건, 중기 세수,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등 심층 분석

②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쳐 국회 제출

Ⅱ.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1 대내외 경제 여건

(1) 세계경제

- ('23년) 글로벌 고물가 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긴축 등으로 교역 및 성장세 부진

* 글로벌 PMI(p) : <제조업> ('23.1/4)49.5 (2/4)49.3 <서비스업> ('23.1/4)52.4 (2/4)54.9

- 최근 세계경제는 원자재*·금융시장 변동성 및 미국 국채금리 상승,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러·우 전쟁 향방, 사우디 등 OPEC+ 감산 영향, 흑해곡물협정 중단 영향 등

- 향후 서비스업 회복세는 점차 둔화되겠지만, 재고조정, IT 수요 회복 등으로 교역·제조업은 점차 회복 전망

- ('24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물가·성장 흐름이 점차 안정화 되겠지만, 리스크 요인 잠재

- '24년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세계교역·제조업 개선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 회복 흐름 전망

* 세계교역량 전망(%) : <IMF> ('23)2.0→('24)3.7 <OECD> ('23)1.6→('24)3.8

- 중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추이, 글로벌 분업구조 및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등 높은 불확실성 지속

세계경제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23	'24	'25	'26	'27	'28
세계 성장률		3.0	3.0	3.2	3.2	3.1	3.0
- 선진국	성장	1.5	1.4	1.8	1.9	1.8	1.8
	물가	4.7	2.8	2.1	1.9	1.9	1.9
- 신흥국	성장	4.0	4.1	4.0	4.0	3.9	3.9
	물가	8.3	6.8	5.2	4.7	4.6	4.4

* 출처 : World Economic Outlook(IMF, '23~'24년은 7월 전망, '25년 이후는 4월 전망 기준)

[2] 국내경제

- ('23년) 물가·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개선 조짐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3.1) 5.2 (2) 4.8 (3) 4.2 (4) 3.7 (5) 3.3 (6) 2.7 (7) 2.3

*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3.1)41.1 (2)31.2 (3)46.9 (4)35.4 (5)35.1 (6)33.3 (7)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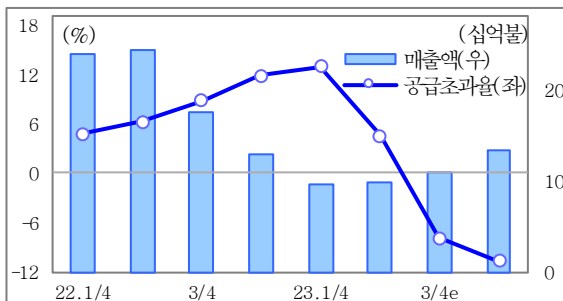
- 하반기로 갈수록 IT 업황 회복, 중국인 방한관광객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 개선 전망

* 성장률(전기비, %): ('22.1/4) 0.7 (2/4) 0.8 (3/4) 0.2 (4/4)△0.3 ('23.1/4) 0.3 (2/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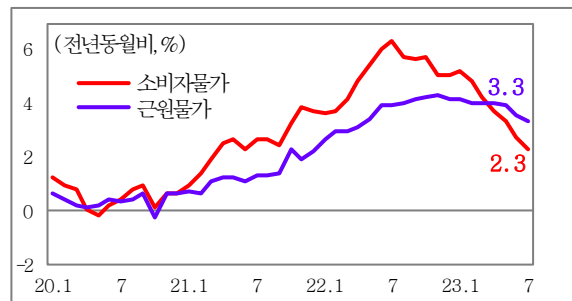
- 다만, 美·中 등 주요국 경제상황 및 금융시장 관련 불확실성 상존

- 물가는 오름세가 둔화되겠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 지속

글로벌 D램 공급초과율 및 매출 전망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 ('24년 이후) '24년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

- '24년은 글로벌 물가안정 흐름, 세계교역·제조업 개선, IT업황 회복 등으로 우리경제 회복세 강화 전망

* '24년 IMF 주요국 성장 전망(%) : (韓) 2.4 (선진국) 1.4 (美) 1.0 (유로존) 1.5 (英) 1.0 (日) 1.0

-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세, 글로벌 경기회복 등은 긍정적 요인

-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혁신 및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필요

2 재정 여건

- ◇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 확대와 지출 효율화 필요성 상존
- ◇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빠른 속도로 증가

- (지출)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 효율화 필요성 상존
 -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
 - 반면, 경기변동에 따른 국세수입 변화, 확대된 국가채무 수준 등 지출 효율화 필요성 상존
- (수입)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운 세입여건이 지속중이나, '24년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점차 개선될 전망
 - * 성장률 전망(전년동기비, %) : ('23.上) 0.9 → ('23.下) 1.8 → ('24년) 2.4
 - '23년은 '22.4분기 이후 급속한 경기·자산시장 둔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자산 관련 세목 중심으로 '22년 대비 감소 예상
 - '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전망이나,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상존
- (조세부담률) OECD 평균(25.0%, '21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2년까지는 빠른 속도로 증가
 - 다만, '23년 세수감소 영향으로 낮아진 후,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

연도별 조세부담률(단위 : %)

'17	'18	'19	'20	'21	'22 ^P	'23 ^P	'24 ^P	'25 ^P	'26 ^P	'27 ^P
18.8	19.9	19.9	20.0	22.0	23.8	23.2	20.9	21.5	21.6	21.7

'21년 OECD 주요국 조세부담률(단위 :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OECD 평균*
20.2	19.8	30.3	24.6	26.8	25.0*

* OECD 평균 : 호주, 일본은 '20년 기준 조세부담률

【참고 : 증장기 세입 전망】

- ◇ **(여건)** '22년에는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세계경제 둔화 영향 등으로 '23년 세입여건은 악화
- ◇ **(전망)** 경기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으나, 경제성장에 따라 증장기 국세수입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세수여건 변화)** '22년 세입여건은 양호했으나, '23년 세입여건은 세계경제 둔화 등 영향으로 급격히 악화

- ('22년) 기업실적 개선, 소비 등 경기호조에 따라 기간세목(법인·소득·부가) 중심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
- ('23년) 세계경제 둔화 및 자산시장 침체 등에 따라 세입여건이 급격히 악화

□ **(증장기 전망)** 경기변동에 따라 국세수입 규모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 유지 예상

- '23년에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22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전망이나,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상존

(단위 : 조원)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400.5	367.4	401.3	423.2	444.9

* '23년 : 예산 기준

Ⅲ.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기 본 방 향

- ◇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내수 지원**
 -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선제적 미래 대비** 노력 병행
- ◇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세제 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조** 복원

비전	경제 활력 · 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		
기본 방향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추진 전략	✓ 투자·고용 촉진 ✓ 기업경쟁력 제고 ✓ 미래 대비	✓ 서민·중산층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납세자 권익보호 ✓ 제도 합리화 및 국제규범화 ✓ 세입기반 확대

1 소득·금융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소득세율은 6~45%이며, 최고세율(국세 45%, 지방세 포함 49.5%)은 OECD 평균보다 높고 G7국가 평균과 비슷한 수준

* 최고세율 평균: OECD(36.1%, 지방세 포함 42.5%) G7(43.3%, 지방세포함 49.1%)

- 소득세수 비중(지방세 포함)은 총조세 대비 28.6%, GDP 대비 6.6% 수준('22년)

* OECD 평균 소득세 세수 비중('21년): 총조세 대비 32.4%, GDP 대비 8.3%

- 소득세수는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추세

연도별 소득세수(단위 : 조원)

	'15	'16	'17	'18	'19	'20	'21	'22
소득세수	60.7	68.5	75.1	84.5	83.6	93.1	114.1	127.8

- 금융 관련 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5%) 또는 양도소득세(20·25%) 과세,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 과세(코스피 기준 종목당 10억원/지분율 1% 이상)

(2) 중장기 정책방향

- 소득 종류별·납세자 계층별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 선진국형 과세체계 구축
- 비과세·감면제도 적정화, 세원투명성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득세 기반 확충
- 금융시장 활성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

(3) '23년 추진과제

【 경제활력 제고 】

- ☐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월 300→500만원)
- ☐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비과세
 - * 민간 투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

【 민생경제 안정 】

-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 ☐ 고액기부(3천만원 초과)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 상향(30→40%) 및 용역기부 범위* 확대 및 용역가액 상향(1일 5→8만원)
 - * (현 행) 특별재난지역 → (개정안)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연 240→300만원)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4) 중장기 추진과제

-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비과세·감면 제도 및 공제제도의 적정성 검토 및 정비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및 세원 투명성 확보, 과표 양성화
- ☐ 금융시장 상황에 맞는 금융소득 과세제도 합리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

2 법인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법인세율은 9%~24% 4단계 누진세율 구조

- 최고세율(국세 24%, 지방세 포함 26.4%)은 OECD 평균(21.2%, 23.2%)보다 2.8%p(지방세 포함 3.2%p) 높은 수준
- 4단계 누진세율은 대부분 OECD 회원국이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임을 고려할 때 복잡하며 경제적 비효율 야기

* 국가별 세율구조 1단계(단일세율): 24개국, 2단계: 11개국,
3단계 이상: 3개국(룩셈부르크 3단계, 한국 4단계, 코스타리카 5단계)

□ 법인세수 비중(지방세 포함)은 총조세 대비 23.4%, GDP 대비 5.4% 수준('22년)으로 OECD국가에 비해 높음

* OECD 평균 법인세 세수 비중('21년): 총조세 대비 13.3%, GDP 대비 3.1%

- 법인세수는 경제여건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연도별 법인세수(단위 : 조원)

	'15	'16	'17	'18	'19	'20	'21	'22
법인세수	45.0	52.1	59.2	70.9	72.2	55.5	70.4	103.6

(2) 중장기 정책방향

- 경쟁력 제고 및 투자·일자리 촉진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법인세 과세체계 확립
- 법인세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

(3) '23년 추진과제

【 경제활력 제고 】

- ☐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 특례 신설
-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 해소
- ☐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민생경제 안정 】

- ☐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산입 명확화
- ☐ 저신용자 신용회복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 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 납세 형평 제고 】

- ☐ 자본거래를 통한 감액배당 과세범위를 합리화하고, 감자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제외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합리화

(4) 중장기 추진과제

-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구조로의 전환
-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지속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정비하여 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 ☐ 납세협력비용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과세체계 정비

3 재산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자산 총액 기준), 증여세는 취득세 방식(수증자의 증여받은 자산 기준)으로 운영

*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4개국 중 4개국(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만 유산세 방식, 나머지 20개국(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

- 최고세율(50%)은 OECD(평균 26.1%) 중 일본(55%)에 이어 2위 수준

-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6~45% 누진세율 과세,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2년간 한시 배제 중('22.5.10.~'24.5.9.)

* (2주택)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 시행('22)

- (종합부동산세) 그간 급증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 부동산세 제도 정상화 추진

*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7) 33.2만명 → ('22) 119.5만명, 약 4배 증가
(세액) ('17) 0.4조원 → ('22) 3.3조원, 약 8배 증가

- '22년 세제개편 시 세율·과표 조정,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조치

(2) 중장기 정책방향

- 과세형평, 세부담 적정성,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상속·증여 세제 합리화

-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납세자 담세 능력을 고려하여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

(3) '23년 추진과제

【 경제활력 제고 】

-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개편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년)
 - *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상속시 합산과세)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대분류내)
- ☐ 결혼·출산 등 지원을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 민생경제 안정 】

- ☐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조치 지속 추진
 - 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에 대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혜택 확대

(4) 중장기 추진과제

- ☐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 응능부담 원칙,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세체계 합리화
-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세부담 적정성,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다주택자·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 개편을 지속 검토

4 소비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지방세 포함)은 총조세 대비 21.2%, GDP 대비 4.9% 수준('22년)

* OECD 평균 일반소비세 세수 비중('21년): 총조세 대비 30.2%, GDP 대비 7.2%

- 현행 세율(10%)은 OECD 평균(19.3%)에 비해 낮으나, 일본(10%), 대만(5%), 싱가포르(7%) 등 아시아 주변국과 비교시 낮지 않은 수준

OECD 주요국 부가가치세율(단위 : %)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OECD 평균
20	20	19	10	10	19.3

- 개별소비세(에너지, 주세, 담배세 등 포함) 세수 비중(지방세 포함)은 총조세 대비 8.8%, GDP 대비 2.0% 수준('22년)

* OECD 평균 개별소비세 세수 비중('21년): (총조세 대비) 11.9%, (GDP 대비) 2.8%

(2) 중장기 정책방향

- 불요불급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조세특례 정비와 투명한 세원 관리를 통한 세원 확보 기반 마련
- 탄소중립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에너지과세체계로 개편하고,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3) '23년 추진과제

【 경제활력 제고 】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 확대를 위해 사후환급 최소 기준 금액 인하(건당 3만원→1.5만원) 및 즉시환급(1회50만원→1회70만원) 등 상향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본세율의 △30% 인하)

【 민생경제 안정 】

- ☐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보편적인 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3.10.1.~)
- ☐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 부담 차이를 반영하여 필요시 탄력세율로 조정(법정세율의 $\pm 30\%$ 범위)
- ☐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 물가안정 및 중산·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및 유류세 환급·감면 특례제도 등 적용기한 연장

【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 ☐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취소 후 2년 미도과자의 친족 등 특수 관계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 신청시 재취득 제한
-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2배로 상향 조정

* 현행 주세포탈 기준금액은 '99년말 주세법 개정으로 결정된 이후 변동 없음

(4) 중장기 추진과제

- ☐ 새로운 국제거래 환경 및 국제규범에 맞는 소비세제 개선
 - 디지털 경제를 활용한 투명한 세원 관리 등 국제기준 및 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부가가치세제 마련
 -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감축 노력을 준수하되, 기업의 국제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한 친환경 에너지 과세체계 검토
- ☐ 민생 경제 안정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비세제 합리화
 - 물가 안정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제 합리화 및 주세 관련 규제 개선 추진
 - 국민 후생, 경제·사회 환경 변화,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면제·영세율 지속 정비

5 국제조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디지털화,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따라 국제조세 정책수요 급증

- 새로운 금융상품·사업모델 등장 등에 따른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하여 역외탈세 추정금액도 상승 추세

역외탈세조사 추정금액(단위 : 건, 억원)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건 수	156	202	211	226	223	228	233	226	233	192	197
부과액	9,637	8,258	10,789	12,179	12,861	13,072	13,192	13,376	13,896	12,837	13,416

-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OECD BEPS* 방지 프로젝트 등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 공조 강화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 (디지털세) OECD 포괄적 이행체계 143개국 중 138개 국가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필라1, 2)에 대한 성명문* 발표('23.7.12)

* (필라1) 시장소재지 기반으로 새로운 과세권을 행사하는 다자조약안 마련(Amount A), 이전가격 세제 단순화(Amount B)

(필라2)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수취국에서 최저한세율(9%) 미만 과세시 원천지국에 추가과세권(9% 미달분) 부여(원천지국과세규칙)

- (정보교환)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및 자동금융정보교환 이행규정 개정·상호평가* 등 활동 강화

* (OECD 기준 이행여부 점검) 국내법 완비 여부, 교환한 정보의 실효성 등

(2) 중장기 정책방향

-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ECD·G20 논의에 적극 참여 및 관련 국내제도 정비

-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교환 확대

- 국제기준·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및 조세조약 제·개정 지속 추진

(3) '23년 추진과제

【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 경제활력 제고 】

-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관련 일부 시행시기 조정
* (소득산입규칙) '24.1.1. 시행, (소득산입보완규칙) 1년 유예('24.1.1.→'25.1.1. 시행)
- ☐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

【 조세협력 강화 및 디지털세 대응 】

-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의 국내법적 근거 마련
* 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모의 국가 중심으로 단계적 설치 추진
- ☐ 디지털세 필라1 관련 협상 마무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 ☐ 글로벌최저한세(필라2)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이행체계* 논의 참여
* 하반기 OECD 실무작업반회의에서 필라2 행정지침, 국가별 입법안의 적격여부에 대한 동료평가방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교환방법 등 논의 예정

(4) 중장기 추진과제

- ☐ 국제 동향, 국내 사례 등을 고려하여 BEPS 방지제도 실효성 제고
 - 디지털세 이행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애로 해소를 위해 집행 간소화, 과세당국간 협조 등 지원 방안 강구
- ☐ 역외 세원관리 강화, 국제거래 과세방식 합리화 등 제도개선 지속
-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조세조약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조세정보 교환국가 확대**

* (조약 제·개정)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키프로스 등과 협상 추진 예정

** (정보교환국가 확대) ('23) 114개국 → ('24년 목표) 119개국

6

관세 · FTA 분야

(1) 현황 및 평가

- '22년 관세 징수액은 약 10.3조원으로, 총 국세 중 관세 비중은 약 2.6%로 최근 5년간 3% 이하 수준

* 연도별 총 국세 중 관세 비중(%): ('18) 3.0 ('19) 2.7 ('20) 2.5 ('21) 2.4 ('22) 2.6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속, 새로운 교역형태 증가 등 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적극적인 관세제도 정비 필요

-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서민 생활물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

- 현재 59개국과 21개의 FTA 발효 중이며, 다양한 형태의 무역협정 및 기존 FTA 개선 협상 추진 중

* 전체 대비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19) 69.4 ('20) 72.0 ('21) 71.6 ('22) 76.5

(2) 중장기 정책방향

-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관세제도 개편

- 기업의 수출입 지원 강화 및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 심사·감면·통관 등 관련 제도 정비

- 물가안정·산업경쟁력 강화 등 탄력관세 본래 취지에 맞게 탄력관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납세자 권익 보호,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해 관세제도 전반에 걸쳐 행정처분 기준 등을 합리화

-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新통상질서에 대응하여 신흥시장 발굴 및 다양한 형태의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다변화 추진

- B2B 거래의 디지털화·B2C 거래 확대 등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무역구조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 추진

(3) '23년 추진과제

【 경제활력 제고 】

-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50%)을 3년 연장
- ☐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기 할당관세(95개 품목)를 적용 중이며, 가격급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긴급 탄력관세제도 운용*
* 1.1.~7.31. 동안 20개 품목(돼지고기, 고등어, 닭고기 등) 관세율 인하
- ☐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주요 교역국인 IPEF 13개국과 무역 원활화 협상 타결 추진

【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 ☐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10%p)
- ☐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
- ☐ 덤프방지관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회덤프 방지제도 도입
- ☐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포탈관세액 등을 공개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 및 처벌(2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마련

(4) 중장기 추진과제

- ☐ 경제·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감면·통관절차 합리화, 관세법령의 정합성 제고 등 제도개선 추진
- ☐ 양자·다자간 원산지·통관 분야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既 체결한 FTA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정비 추진

7 납세협력 등 기타 분야

(1) 현황 및 평가

- ☐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의 중요 권리구제 제도인 심사청구·조세심판 등 조세불복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조세불복 관련 공정성 및 납세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지속
- ☐ (조세회피 방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과세공평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
 - 현재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제2차 납세의무, 가산세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 중
- ☐ (조세법령 새로 쓰기) 조세법령을 수요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 진행 중
 - * '11년 시작하여 법인·부가가치세 등 주요 조세법령의 개정 완료. 현재 부동산 양도세 새로 쓰기 사업 추진 중

(2) 중장기 정책방향

- ☐ 납세협력 부담 완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 친화적 제도개선 지속 추진
- ☐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 및 탈세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 빈번한 개정으로 복잡해진 법령 및 해석례를 종합 분석·검토하여 조세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

(3) '23년 추진과제

【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세불복 제도 개선

- 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 ②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 청구금액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③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 규정*을 통해 비상임조세심판관에게 필요한 자격요건 강화

*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세무법인 등) 소속이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 제외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과세특례 적용 배제 등 제도 개선

- ①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에 의해 실효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과세권 확보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해외 현지기업의 실효세율이 감소된 사실을 한국의 과세당국이 알게된 날부터 1년의 부과제척 연장기한의 특례 신설

- ②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 다수 국민이 불편을 겪고 시장에 큰 부담을 주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독성·명확성·체계성 제고

(4) 증장기 추진과제

□ 조세제도 신뢰도 제고, 납세협력 유도 등을 위해 신고, 경정청구, 불복 등 관련 제도 합리화 추진

□ 법령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조문의 복잡성·난해함을 해소하고 납세협력 비용 경감

IV. 비과세·감면제도 운용 방향

(1) 현황 및 평가

□ '23년 국세감면액(전망)은 69.5조원, 국세감면율(예산 기준)은 13.9%* 추정

* '23년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감소할 전망으로, 국세수입 실적이 '24년에 확정되면 국세감면율 실적은 전망 대비 상승 가능

○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으로 국세감면액 증가율이 국세수입총액 증가율을 상회하여 국세감면율 상향 전망

□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은 강화*하되, 정책목적 달성·정책효과 미흡 제도는 정비**

*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개편 등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 사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국가 양도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종료

(2) 중장기 정책방향

□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회복 중심으로 조세지출 운영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로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 개선·내실화를 통한 효율적 조세지출 관리

(3) '23년 추진과제

【 경제활력 제고 】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세제지원 강화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 민생경제 안정 】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 상향
 - 전통시장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 조세지출 성과평가 시행 및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

(4) 중장기 추진과제

- 정책효과가 미흡하거나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제도 지속 정비 등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 심층평가 대상 선정 시 정책적·기술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실 있는 성과평가 시행